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New Social Risks and Social Welfare for Gender in Blind Spot

서동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ong-Hee Seo(dseokr@yahoo.co.kr)

요약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사회적 위험 | 여성복지 |

Abstract

New social risks is likely to emerge from instability of family structure, flexible of labor market, movement of globalization which is related with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so on. Especially, a lot of women are exposure to not only old social risks but also new social risks. A breakdow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flexible of labor market which is be followed by globalization, women's poverty and limited approaches at social security services are the representation risk which is confront to women.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ocial risk is recognized by breakdow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risk which comes from the social change, aging of population, the decrease of labor population and New Right ideolog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rrange the new welfare state at gender equality level by anglicizing about women's new social risks.

■ keyword : | New Social Risk | Social Welfare for Gender |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

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테일러 구비

* 본 연구는 2008년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1126-002

접수일자 : 2008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23일

교신저자 : 서동희, e-mail : dseokr@yahoo.co.kr

(Taylor-Gooby)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최근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단하면서 이러한 전환기에 개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문제들을 총칭하여 명명한 용어로, 새로운 복지국가 설계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연명(2003)은 구 사회적 위험은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으로 균질적 노동시장이 노동의 양극화와 빈곤의 세습화 가능성으로, 적절한 출산율이 저출산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젊은 인구구조가 노령화의 급진전과 의료비, 수발비 급증으로, 남성가부장모델이 여성취업을 증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1]. 그러나 소위 구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칭되는 노령, 실업 등으로 인한 문제 또한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이 상당히 신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에게 의존하던 삶이 사회문화의 변화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지위 속에서 생겨나는 각종의 불합리함과 불평등이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의 여전히 군림으로 인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전통적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대신 대가족의 보호망 아래 종속된 존재로서 역할을 부여 받았으나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여성들이 가정에 머무를 수만은 없게끔 구조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무너지는 전통가족의 구조, 그로 인한 저출산의 기조, 사회의 여성노동력 요구, 세계화의 물결 등 실로 다양한 변화가 여성을 사회적 위험의 중심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국가의 사회정책은 한 가정의 가장 혹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은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가부장사회가 무너지면서 파생되는 면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이 사회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각종의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시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하는 따위의 제도적 개선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사회적 구조 속에서 찾고, 여성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성인직적 차원에서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시민권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적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위험의 변화

1. 사회적 위험의 개념

사회적위험이란 지금까지의 삶의 조건들을 위협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삶의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 즉, 특정한 조건에 근로자의 삶이 종속되어 있는 사실과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자력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생존의 기반이 되는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정의는 몇 가지 이론적 접근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sping-Andersen은 생산방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탈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후 복지국가의 역할과 그 토대는 기능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1]. Esping-Andersen은 사회적 위험을 ‘계급 위험(class risks)’, ‘생애주기 위험(life-course risks)’, 그리고 ‘세대간 위험(intergenerational risks)’으로 구분한다.

반면 Taylor-Gooby(2004)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과 연관된 결과로서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갖는 다음의 네가

지 발생경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교육의 향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지속된 여성층에서 신사회적 위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케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케어는 상당부분 여성에게 주어지고 여성이 케어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남성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무숙련 생산직의 비중을 줄여온 생산기술의 변동, 그리고 저임금이 비교우위를 이용한 국가간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에 빠질 확률과 장기빈곤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네 번째로 일부국가에서 민영화된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 혹은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윤홍식(2006)은 산업화 된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12].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이에 따른 여성의 가정활동과 사회활동 사이에서의 양립에 대한 문제, 여성 및 기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노동시장의 진입의 어려움과 진입한 후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데 오는 유급노동과 관련된 위험, 마지막은 복지의 민영화와 관련된 위험이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영역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을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전통적 가족의 틀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고 두 번째 영역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인구의 감소추세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위험,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몰고 온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전통적 가족은 남성이 생계유지자이고 가정이며, 여성들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가정을 기본틀로 하여 형성되었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형태하의 여성은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책임 속

에서 가사노동을 주로 하여 경제활동을 제약받아왔다. 결국 부양자인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사회로 진출하는 기회가 생긴다하더라도 주변자의 역할을 주로 해 왔다. 따라서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 프로그램 역시 결혼상태가 안정적이며 남성이 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모델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핵가족의 모델은 높은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다. 결혼생활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으며, 이혼과 가족해체로 인한 편부모가정의 증가는 아동빈곤을 확대시키게 된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보육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하게 되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위험분산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과거에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 있었던 '보살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창출해낸다. 특히 일상생활의 보살핌은 전통적 가족체계 속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명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하나이다. 보살핌의 영역은 여성의 몫이었으나 여성노동력 참여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보살핌 문제를 더 이상 가족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승화시켰다[1].

다음은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가정내의 보살핌 관련 사회적 위험에 해당됨과 동시에 노동시장 내의 사회적 위험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경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경제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꾸준히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고령화'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윤도현(2004)은 신자유주의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첫째, 발전된 시장경제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정과 개혁을 점점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의 적응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동적인’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소득정책과 조세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경기부양을 가능케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하며,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소득, 조세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는 나아가 사회 인프라(교육, 복지, 보건, 교통, 문화 등)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11].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복지의 과잉이 문제였을 정도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사회적 지출의 절대 규모나 GDP에서의 비중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사회적 안정망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추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특이성을 가진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하는 한계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다.

III. 사각지대 여성과 사회적 위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가정 내

기존의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민주성, 자율성, 그리고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었다[15]. 이로 인해 제도적 가족의 의미는 쇠퇴하고, 가족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는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동반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혼을 비롯한 가족의 불안정성이 배태되었고[13], 가정에서나 노동시장에서 독립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가족부양자모델[17]’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들에서 경제적 활동으로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집의 관리와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 데 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성별분업을 침식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점차 여성들이 유급노동자로 인식되기 시작되었으며, 안정적 가족을 지탱해온 가사 서비스는 더 이상 여성의 고유영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정형화되었던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형태를 뛰어넘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마저도 무너지고 있다[7]. 그러나 이미 상당부분 무너져 버린 남성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의 대안인 양소득자모델(dual-breadwinner model)의 등장 또한 아직까지 전환에 필수적인 조건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과 노인부양정책의 미비는 여성들의 저출산을 야기하고, 가정내 육아와 노인 부양의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Walby(1990)는 이러한 최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가부장제의 전략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20]. 과거 고용 분야에서 여성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배제전략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분리시키는 분리전략으로 변화하여 여성의 보수와 지위를 결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활

동참가율을 나타내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수직적 수평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수년간 급속히 진행되어 온 비정규직의 규모로만 보면 OECD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때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뚜렷한데 남성들은 정규직 대비 절반의 수준이 비정규직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삼분의 이가 비정규이다[10].

이러한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는 한창 일 할 연령대의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로 인해 개인적, 가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여성노인의 빈곤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해 온 사회제도적, 문화적 요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3. 여성의 빈곤화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여성은 구사회적 위험을 일정정도 막아내는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사회적 위험의 중심에 있게 되어 절대 빈곤층 및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기 쉽다[2].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4.5%로 남성가구주 가구 10.5%에 비해 24%나 높게 나타난다. 노동소득배분을 또한 여성의 경우 계속 하락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5]. 또한 세계화,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혁신,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집단에게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특히 저학력, 저기술 및 보살핌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한 사회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젊은 시절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성차별은 일생동안 누적되어 결국 은퇴 후 노후의 경제적 궁핍에 기여하게 된다[8]. 특히 비정규직 이거나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젊어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노후에도 남편 없이는 독립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 수혜자라고 할지라도 보험급여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그대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은 더 큰 문제가 된다.

4. 사회보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여성노동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먼저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빈민여성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여성근로자들을 사회복지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제도 자체의 성격으로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수급권은 기여여부, 즉 보험료 납부여부를 전제로 한다. 현재 4대 보험은 모두 공식부문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 자체가 짧고 고용계약조차 불명확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격한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셋째, 위험노출시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는가에서 사회복지수혜자라고 할지라도 보험급여의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 위험에 노출 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대체율이 43%에 머물고 있으며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 정도에 한정되어 장기실업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01년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산후휴가는 급여수준이 낮고 급여기간 역시 30일로 기간이 짧아 실제적인 위험분산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급여부분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서기에 중병에 걸릴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1].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50%이상이 민간시설이며 공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되어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므로 실효성이 미비한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서 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의 원리를 수정하고, 성별을 고려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새로이 부각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전통적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여성은 가정 밖 사회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과 혜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위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불확실하여 노동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서도 제한된 혜택만을 얻고 있는 여성은 신,구 사회적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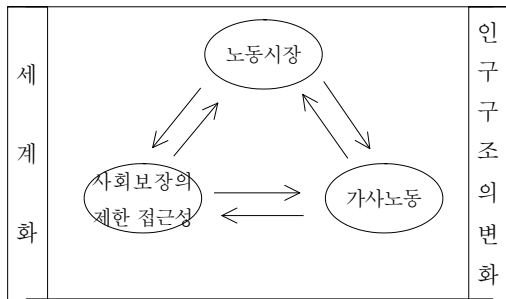


그림 1.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연관관계

IV. 새로운 복지국가 설계: 젠더중립의 관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근간으로 여겨왔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가능하다.

1. ‘성 차이’ 를 인정하는 제도 개발

최근 국가의 정책은 양성이 공식적으로 평등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적 법령을 재규정하는 작업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성차별적 관행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성중립적 정책은 결국 계속되는 성차별적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성간의 분업의 변형을 통한 평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젠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복지체제를 유형화하여 비판을 받아온 Esping-Andersen(2002)은 최근 복지의 주요책임소재가 되어온 가족의 존재를 인

정하고 탈가족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젠더의 틀을 제시하였다. 남성이 여성의 사적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성별분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남성부양자모델을 개인주의단위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고는 완전한 양성의 평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책적으로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게끔 혹은 육아를 완전히 의무화하는 법이나 정책을 입안한다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아버지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정책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남성의 노동은 여전히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은 자녀가 취학연령에 이를 때까지 시간제노동에 종사하는 분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1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가부장적 성격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구조하에서 이상적인 남녀평등의 추구는 현실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이때 ‘성 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2]를 고려해 볼직 하다.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완전히 공유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서야만 양성평등을 이룬다는 인식을 벗어나 ‘성 차이’에서 오는 ‘차별성’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분담이 아닌 더불어 가정을 이룬다는 의식 속에서 육아의 사회적 지원과 ‘성 차이’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어려움, 또한 직업과 훈련 외에 여성들에게도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적 독립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득세나 사회보장의 부분분리계정을 요구하고 육아를 포함하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독립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복지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9].

2.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기존의 가부장적 사상을 지니고 있고, 성별분업에 대한 이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 등이 팽배해 있는 환경은 여성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급하게 변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 노동자'의 경우 조화로운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야근을 하는 노동자가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일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제도들이 점차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원인 중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를 꼽고 있다. 이는 비단 여성들 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14]. 출산과 양육이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인식하여 비용이나 사회적 배려의 측면에서 공동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공보육체계를 확립하여 영·유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위한 양육까지도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확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대상의 변화

한국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남성에 의해 부양되어지는 의존적 존재로서 가정 내의 위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도 여성이 정책대상의 '주체'가 아닌 '부수적 존재'로 은연중에 취급되어진다.

앞서의 설명에서 보듯이 한국의 여성은 더 이상 전통적으로 규정된 가정 내의 역할로 인해 사회생활을 억압받지도 교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정 내 전통적 역할논리의 변화가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는가 하면 반면 여전한 남성부양자 중심의 사회정책이 여성들을 정책대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어머니'나 '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체, 즉 '노동자(worker)'이면서 '어머니'인 한 개인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6]. 이제는 가족과 사회라는 이분법적인 영역을 해체할 시점이며,

사적 영역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만 맡기던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맡아 여성들이 양육이나 성역할에서의 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고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결혼기피, 출산기피의 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것이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어떠한 개념으로 파악하느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 어머니이면서 노동자로서 여성을 인식한다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이 마땅히 되기 때문에 여성이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적영역에서의 복지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연금정책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그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여성을 기본적으로 '노동자'이자 '어머니'로 규정한다면 정책대상이 되는 여성이 갖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희생이나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겪는 각종의 성차별을 덜 받는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변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현실점에서 사회보편적 관념만을 고집하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으로서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 현실타파적 사회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계화의 흐름과 기존의 전통적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통가족의 붕괴와 노동인구의 감소 등의 이유와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의 성장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실질적 지위는 여전히 성별분업화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복지의 기반조차 제대로 닦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 선진복지국가의 위기를 운운하며 사회복지의 뒷걸음치기를 강요하는 듯한 움직임

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살리기를 제1의 공약으로 삼고 세계화에 집중하는 현 정권 역시 사회복지의 제공자(provider)로서의 입장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데 이들 위험의 중심에 여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오랜 기간 남성부양자모델의 가사전담자로서 가정의 육아와 보살핌의 역할을 전담해 왔으나, 여성의 50%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제한이 되는 위험, 가족의 보살핌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는 성별분업의 논리 속 사회구조의 불합리성, 남성위주로 설계된 사회정책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혜택 등이 결국 여성의 노후를 빈곤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분적 제도개선 정도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중심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다소 거시적이고 현실타파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입안할 때에 기본전제가 되는 '남성부양자모델'을 부정하고 '개인주의 단위모델'을 근간으로 각종의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육아와 관련하여 '평등'을 내세운 육아역할의 이분화보다는 더불어 가정을 이룬다는 의식 속에서 육아의 사회적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정의 보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셋째, '여성'이 남성의 '아내'로 암묵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노동자'인 동시에 '어머니'로 인정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은 개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유연하게 사회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하 것이 다.

참 고 문 헌

- [1] 김연명, “사회적 위험’과 한국의 사회보험체계”, *문화/과학*, 제35집, pp.135-149, 2003.
- [2] 김영란, “여성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3권, 제3호, pp.551-583, 1999.
- [3] 김영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 정책”, *한국사회학*, 제40권, 제2호, pp.189-226, 1999.
- [4] 김철주, 박보영,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제24집, pp.317-336, 2006.
- [5] 류정순, “빈곤의 여성화 추이”,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6] 서동희,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2호, pp.174-181, 2008.
- [7] 서동희,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 개념과 연금정책의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pp.37-54, 2006.
- [8] 서동희, “영국, 스웨덴, 한국의 여성과 연금정책”, 영국 버밍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9] 신기석, 박영인, “복지국가의 여성정책 과제”, *대학원논문집*, 제26권, pp.217-237, 2001.
- [10] 여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 2007.
- [11] 윤도현,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한국사회학*, 제37집, 제1호, pp.51-66, 2003.
- [12] 윤홍식,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사적(가족)영역으로부터의 접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pp.103-137, 2006.
- [13] 이진숙,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들과 대응”, *사회복지연구*, 제30호, pp.5-38, 2001.
- [14] 장지연, 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제66권, pp.149-179, 2003.
- [15] U. Beck and E. Beck-Gernsheim, “Nicht Autonomie, sondern Bastelbiographie,” *Zeitschrift fuer Soziologie*, 22. pp.178-187,

1993.

- [16] G.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17] J. Lewis, *Women and Social Policy in Europe*, Edward Elgar, 1992.
- [18] I. Persson, *Generating 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the Swedish experience*,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90.
- [19] P. Taylor-Gooby,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28, 2004.
- [20] S. Walby, *Theorizing Patriarchy*, Blackwell, 1990.

저 자 소 개

서 동 희(Dong-Hee Seo)

정회원



- 2001년 12월 : The University of Birmingham(사회정책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행정전공 교수

<관심분야> : 복지정책, 여성정책, 조직이론